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14일

중소기업청장

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 가능한 기업 및 지원시설 등을 확대함
(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1조의8제2항제4호)

- 나. 모태조합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「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」에서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으로 상향 조정함.
(안 제3조의5제3항)
- 다.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에 일반 개인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의6제3항)
- 라.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문구를 분명히 함.(안 제7조제4항)
- 마. 벤처확인 취소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(안 제18조의6제1항)

3. 의견제출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벤처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go.kr)의 “행정정보-법률정보-공고”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

(전화 : 042-481-4494, Fax : 042-472-3282)